예 산 총 칙

2023년도 추경 4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Γ	합 계	603,299,637	18,098,989
일반회계		582,312,633	17,469,379
특별회계		20,987,004	629,610
	기타특별회계	20,987,004	629,610
	상수도특별회계	4,848,368	145,451
l	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	1,269,064	38,072
l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710,817	21,325
l	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	3,426,419	102,793
l	주차장특별회계	282,980	8,489
l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69,578	2,087
	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	7,316,311	219,489
L	하수도특별회계	3,063,467	91,904

- 제 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 과 같다.
-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577,831천원으로 한다.
- 제 4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"해당없음"과 같다.
-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- 제 6 조 기금운용계획서는 별첨 "기금운용계획"과 같다.
-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